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2. 1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년 2월 4일
- 나. 제출자 : 신홍식 의원 외 4인
- 다. 회부일자 : 2014년 2월 4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4. 2.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홍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신설하고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함.(안 제4조)
 - 심의대상 범위를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으로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
 - 심의대상 중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 함.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를 추가함.(안 제11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심의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신설하고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였음.
 - 안 제11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를 추가 신설하였음.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계약 제도를 구현하고 지방계약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6
----------	-----

발의연월일 : 2014년 2월 일
발 의 자 : 신흥식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신설하고 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함.(안 제4조)
 - 심의대상 범위를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으로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

- 심의대상 중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 함.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함.(안 제11조)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08조, 제10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 무 과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9조에 따른”으로, “영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및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영 제 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 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및 주민 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을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인가를”을 “인가·허가 등을”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심의 대상)”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는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회의 소집)”을“(회의소집 및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 소집한다.

제5조제3항 중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를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로, “심의”를 각각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를”을 “심의 또는 자문을”로,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공사, 용역, 물품)”을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출석토록”을 “출석하도록”으로 한다.

제7조 중 “심의를”을 각각 “심의나 자문을”로, “요청서”를 “또는 자문요청서”로,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을 “붙여서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서”를 “제7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로, “없이 이를”을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심의하여야”를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면 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 당해 심의 기간”을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으로, “이내에 한”을 “이내에 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결과”로 한다. 제9조 중 “심의를”을 “심의 또는 자문을”로,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 중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심의로”를 “심이나 자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연간단가계약제외)”를 “이하”로,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건별로 적용한다.

제11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직접적 관련하여”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및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같은 법 시행령(이하 ----- ----- 제109조에 따른 ----- ----- -----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 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등포구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

1. ----- 따라 -----
 ----- 포함한다)-----
 -- 있는 사람
2. ----- 있는 사람으-----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 따른 --

 -----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
5. ----- 따라 -----
 ---- 인가, 허가 등을 -----

 -----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 -----

 ----- 있는 사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로 한다.

③ (생략)

제4조(심 의 대상) ①위원회는 법 제
32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
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 복구 사업 및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
청에 의뢰한 사업은 심의 대상에
서 제외한다.

1. ~ 3. (생략)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5. (생략)

〈신설〉

〈신설〉

----- . -----
----- 남은 기간-----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
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
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
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
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
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입찰참가자격 -----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는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5조(회의 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법 제3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생략)

③위원장은 심의함에 있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공사, 용역, 물품)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 제1항에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안건과 이해관계가 ----- 심의 또는 자문-----.

제6조(소위원회) ① ----- 심의 또는 자문을 -----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

② ----- 5명 이상 10명 -----.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⑥ (생략)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 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람을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출석하도록 -----.

제7조(심의요청 등) -----
----- 심의나 자문을 -----
----- 또는 자문요청서-----
----- 붙여서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제7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
----- 없이 -----
-----.

② ----- 제1항에 따라 -----
----- 심의 또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

에는 서면 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 당해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 이내에 한정-----.

③ -----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결과-----.

제9조(의견청취 등) -----
----- 심의 또는 자문을 -----
--- 인정하는 경우-----
-----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

2. ----- 위촉 해제를 --

3.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 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주민 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연간단가계약제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주민 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

3. -----
-----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
사무 -----

4. 그 밖에 품위손상 -----
직무수행-----

제11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 이하-----
----- 각 호의 어느 ---
----- 한다.
단,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건별로 적용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 관계전문가, 주민참여 ----- 범위

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공무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
-----.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 범위에서 기술검토 -----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